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31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이학영 · 박해철 · 이해민
허종식 · 김태선 · 서미화
박 정 · 이개호 · 윤종균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금지 등의 조치 대상은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만 한정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규정이 미비하여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판매 금지 등의 조치 권고 및 명령의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부

터 제50조까지 등).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사업자에게”를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로 한다.

제48조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물품등의 통신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제49조제1항 중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1. 사업자: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물품등의 통신판매중개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제50조제1항 본문 중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1. 사업자: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또는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물품등의 통신판매중개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제84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사업자”로 한다.

제8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등의 자진수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통신판매중개를 하고 있는 물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수거·과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통신판매중개가 되고 있는 물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

1. 사업자: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물품등의 통신판매중개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② -----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 -----

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

-----사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1. 사업자: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또는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물품등의 통신판매중개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②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

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8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3. (생략)

②·③ (생략)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생략)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84조(벌칙) ① -----

1. -----
-----사업자

2.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